

창원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1108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조종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종태

피 고 1. A(개명전 이름 B)

2. C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932,567원 및 그중 22,593,752원에 대하여 2020. 12. 31.부터, 8,338,737원에 대하여 2021. 2. 1.부터, 각 2021. 10. 3.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의 2020. 9. 24.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2020. 9. 25.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접수 12835호(갑구:순위번호 11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예지희

